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15. 10



여 주 시

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여주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진흥지구지정)
- 계획시행자 및 승인기관 : 여주시
- 위치 :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57-5번지 일원
- 면적 : 59,202m² (자연녹지지역 :26,257m², 생산녹지지역 : 32,945m²)
- 계획기간 : 2015년 ~ 개발구역지정일

1.1.1 계획의 세부내용

(1) 대상지 현황분석

- 대상지 북측으로 대명산길이 접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국도3호선이 접함
- 대상지 동측으로 태평리 구 시가지가 인접하고, 남측에 미조성 근린공원이 접하고 있으며 가남역 예정지와 약 800m 이격되어 있음
-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일부 존재함



〈 그림 1 - 1 〉 대상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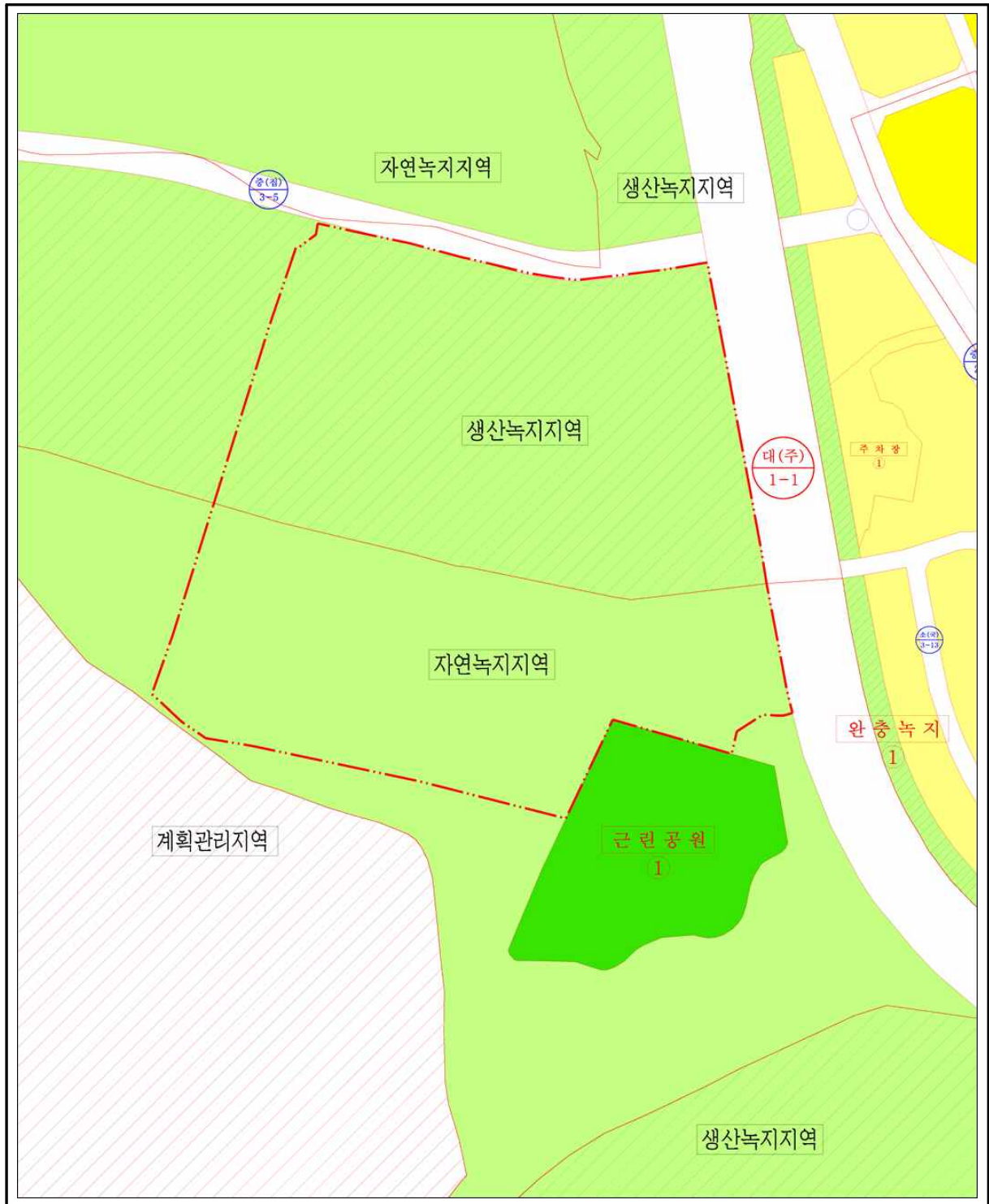
(2)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진흥지구지정)

〈 표 1 - 1 〉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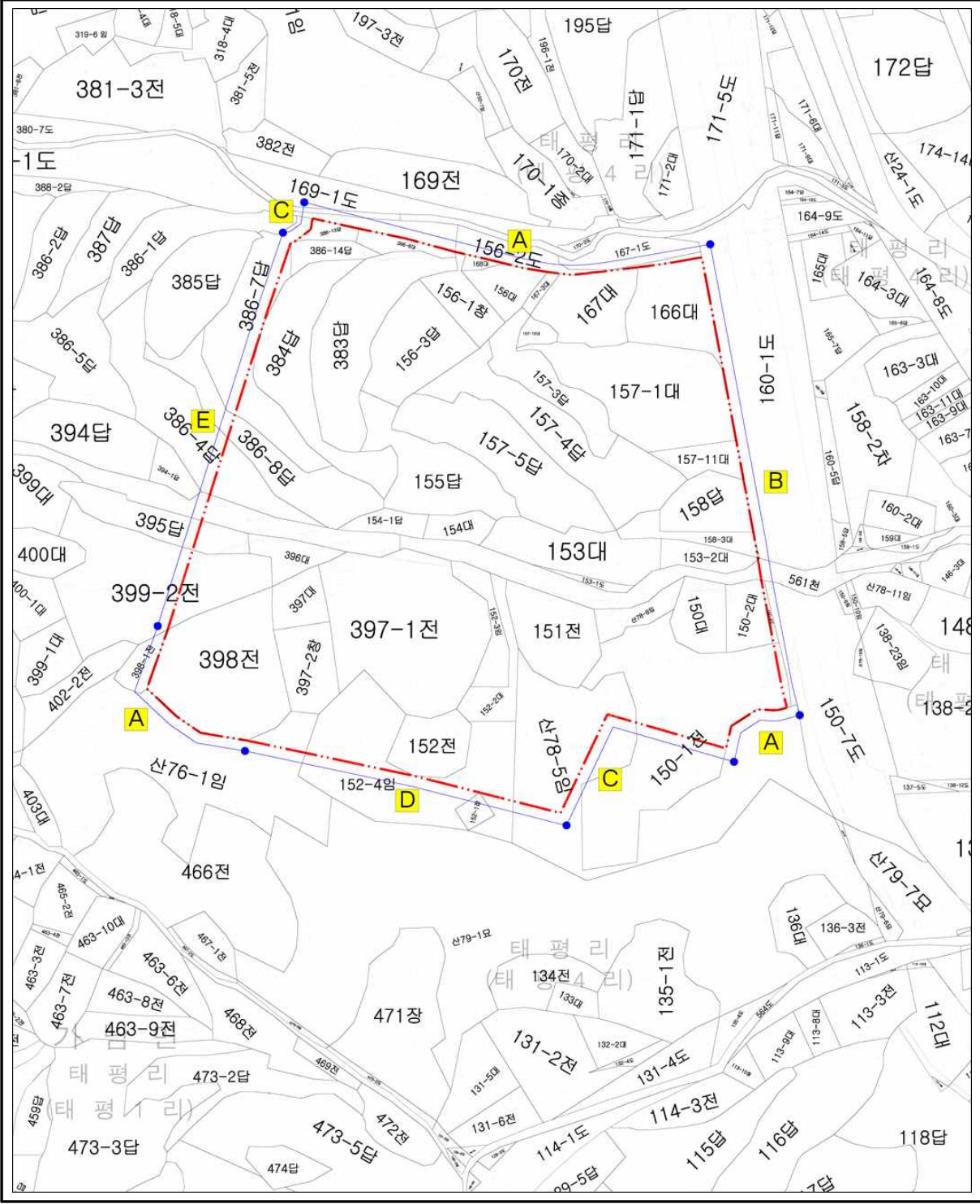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여주태평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57-5번지 일원	-	59,202		

〈 표 1 - 2 〉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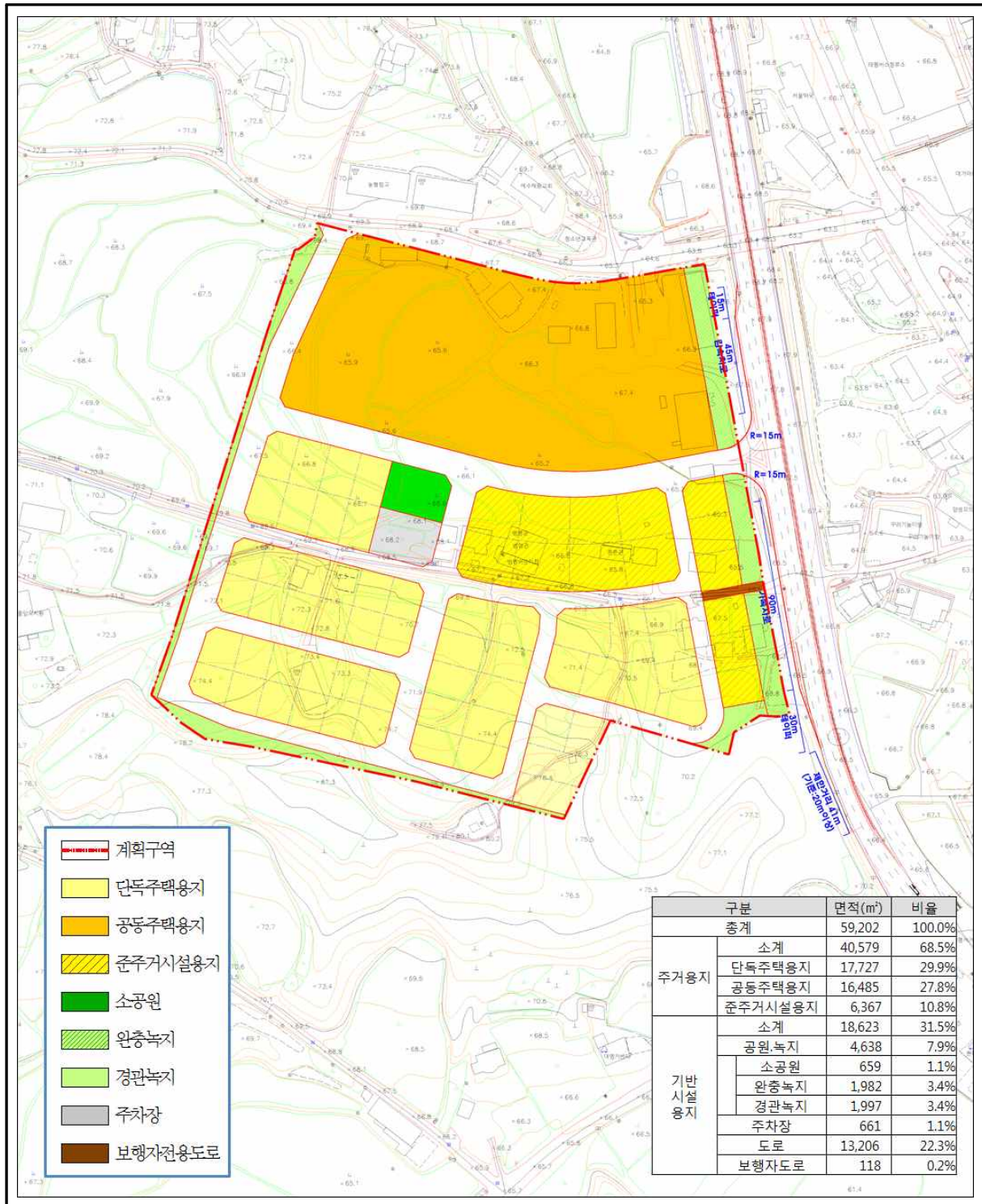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여주태평 개발진흥지구	◦ 개발진흥지구 신설 - 위치 :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57-5번지 일원 - 면적 : 59,202㎡	◦ 개별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함



〈 그림 1 - 2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그림 1 - 3 〉 구역계 결정사유도



〈 그림 1 - 4 〉 토지이용계획도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금회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의해 확정되는 내용임

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생략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1 평가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은 계획의 개요 및 계획안의 특성, 지역특성으로부터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2011, 환경부)」에 제시된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를 고려하여 환경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중점검토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관리계획 수립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포함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영향예측이 곤란한 항목은 일반검토항목으로 선정함

〈 표 2 - 1 〉 평가항목의 설정

구 분	선 정 항 목		제외항목	비 고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		
대기환경	대기질	기상	온실가스	
수환경	수질	-	해양, 수리수문	
토지환경	-	토양, 지형·지질, 토지이용	-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경관	-	
생활환경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악취, 위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 표 2 - 2 〉 평가항목의 선정사유 및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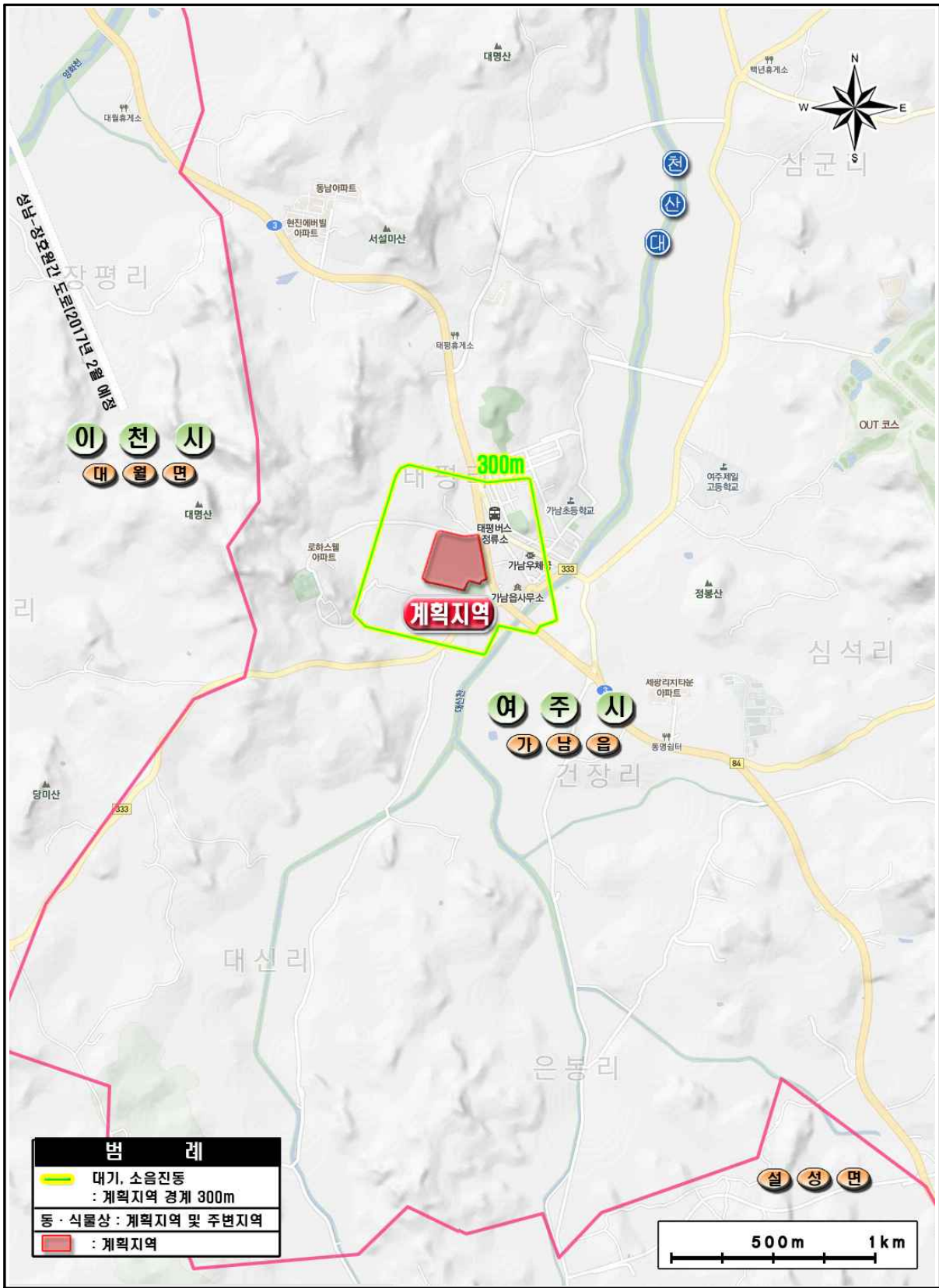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선정(제외) 사유
대기 환경	기 상	일 반 검토항목 ◦ 여주시 기상현황조사
	대 기 질	중 점 검토항목 ◦ 개발진흥지구 지정시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증가
	온실가스	제 외 ◦ 본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 중 대규모로 신규 입지하는 시설결정 등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온실가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등에 대한 평가대상항목이므로 제외함
수환경	수 질	중 점 검토항목 ◦ 개발진흥지구 지정시 인구에 따른 생활오수에 의한 점오염원 발생 변화 및 토지이용 변경, 차량운행 등에 따른 비점오염 물질 발생
	수리수문	제 외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해 양	제 외 ◦ 입지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토지 환경	토 양	일 반 검토항목 ◦ 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토양오염 증가
	지형·지질	일 반 검토항목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토지이용	일 반 검토항목 ◦ 개발진흥지구 지정시 토지별, 용도지구별 변화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중 점 검토항목 ◦ 개발진흥지구 지정시 녹지공간 확보 및 생물서식지 훼손여부 검토
	자연환경 자산	일 반 검토항목 ◦ 계획지역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검토
사회 경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일 반 검토항목 ◦ 개발진흥지구 지정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변화,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소음·진동	중 점 검토항목 ◦ 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소음원 증가와 영향
	경 관	일 반 검토항목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발생
	악 취	제 외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특별한 악취발생원 입지 등의 계획은 없음
	위 락	제 외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위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위생·공중 보건	제 외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위생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일조장해	제 외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 없음
	인구·주거·산업	제 외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전파장해	제 외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 전파장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영향예측 사항 및 범위,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2 - 3 〉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설정

구분	항 목	평가사항	평가범위	평가방법
대기 환경	기 상	◦ 여주시 기상현황조사	◦ 여주시	◦ 이천기상대 10년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 대기질 현황 ◦ 계획수립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측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현장실측을 통한 대기질 분석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검토
수 환경	수 질	◦ 수질 현황 ◦ 계획수립에 따른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측	◦ 계획지역	◦ 현장실측을 통한 지표수질 분석
토지 환경	토지이용	◦ 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용도지구의 변화	◦ 계획지역	◦ 행정계획 검토
	지형·지질	◦ 지형·지질현황(표고, 경사 등)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지형도, 지질도 분석
	토 양	◦ 토양 현황 ◦ 계획수립에 따른 분뇨, 지정폐기물 등 토양오염물질 발생 예측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현장실측을 통한 토양질 분석
자연 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동·식물상 현황(생태자연도 등) ◦ 계획수립에 따른 산림의 훼손, 동·식물상 변화 예측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를 통한 분석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계획수립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검토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행정계획 검토
	소음·진동	◦ 소음·진동 현황 ◦ 계획수립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예측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현장실측을 통한 소음·진동 분석
	경 관	◦ 경관현황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통계연보 및 행정계획 검토



〈 그림 2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위치도

2.3 대안의 설정

- 대안 설정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여야 함
- 본 계획에서의 대안선정은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여러 비교·대안 중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를 실시 후, 최적안을 선정하였으며, 대안의 종류 중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은 본 과업의 특성상 계획에 따른 단순 비교 및 비교 대안의 설정이 불가능하여 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료에서 제외하였음

〈 표 2 - 4 〉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유무
계획비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2.4 대안 평가

2.4.1 대안별 검토방법

-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에서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와 수립시(Action) 계획의 적정성을 비교함
 - 대안 1 :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 대안 2 : 행정계획 미수립시 - 현상태 유지(No Action)

〈 표 2 - 5 〉 계획 수립시와 미수립시 비교검토

구 분			대 안			
세부 검토항목	내 용	협의회의 의견	대안1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대안2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계 획 의 환경목표 와의 합성	1)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가?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과 관련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가?		Yes	·상위 계획을 검토하여 본 계획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본 계획과 관련된 국제적 환경동향은 없으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 시행함	-	·해당사항 없음
	2)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Yes	·항목별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 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에 부합되는가?		Yes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에 부합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가?		-	·오염총량검토 후 할당 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 협의할 것임	-	·해당사항 없음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Yes	·각종 계획 및 시책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임	-	·해당사항 없음
	가. 계 획 의 적 정 성					

(표 계속)

구 분			대 안			
세부 검토항목	내 용	협의회의 의견	대안1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대안2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계 획 의 적 정 성	3)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지방의 제21, 경관계획 등)과 의 연관성 및 이를 준 수하기 위한 계획이 적 정하게 반영되었는가?		Yes	·환경기준 및 시·도 환경 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경관계획 등에 부합하도 록 계획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지역의 각종 조례(한 경보전조례, 녹지보전 조례, 자연경관보전조 례 등)상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이 수립되었는가?		Yes	·지역의 각종 조례에 부 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나) 계 획 의 건 전 성 및 지 속 가 능 성					
	1) 환경계획의 건전성					
	·국토의 생태적 건전 성, 환경과 개발의 조 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 려되었는가?		Yes	·관리계획 수립시 주변 지역과 연계방안 검토함	-	·해당사항 없음
	·광역적 생태·녹지축(백 두대간, 정맥, 하천 등) 보전 등 각종 보 호지역을 충분히 고려 하여 계획되었는가?		Yes	·각종 보호지역을 파악· 검토하여 보호지역에 대 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 록 계획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 지이용 차원에서 생활 권 배분 등 공간계획 이 효율적으로 계획되 었는가?		Yes	·주변과 연계하여 관리계 획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 와 관련 장단기적 보 전대책을 감안하여 계 획이 수립되었는가?		Yes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 획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2)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 하여 계획이 수립되었 는가?		Yes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 여 계획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개발계획의 수요·규모, 수단 예측시 환경용 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 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가?		Yes	·계획수립시 환경요소를 고려함	-	·해당사항 없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환경지수의 목표치 와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Yes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의 유지·달성을 위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여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표 계속)

구 분			대 안			
세부 검토항목	내 용	협의회 의견	대안1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대안2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계 획 의 적 정 성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 계하여 환경계획이 타 당하게 수립되었는가?	Yes	·상위계획과 연계된 행정 계획으로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수 립함	-	·해당사항 없음
	다)계획의 일관성	1) 수직적 일관성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 관성 있게 계획되었는 가?	Yes	·사업관련 상·하위 행정 계획과의 일관성 확보함	-	·해당사항 없음
		2)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 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 성이 일관되게 반영되 었는가?	Yes	·사업관련 상·하위 행정 계획과의 일관성 확보함	-	·해당사항 없음
	라)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 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 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항목 등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의 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해당사항 없음
나. 입 지 의 타 당 성	가)자연 환 경에 미 치는 영 향	1)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 연환경보전 가치가 있 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가?	-	·본 대상지는 대부분 농 경지로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 가 낮은 지역임	-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을 초래하는가?	-	·본 대상지는 대부분 농 경지로 산림축의 훼손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 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 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 한 영향이 우려되는가?	-	·본 대상지는 대부분 농 경지로 생태적 보전가치 가 낮은 지역임	-	·해당사항 없음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 지는 않는가?	-	·본 대상지는 대부분 농 경지로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 단절 영 향 미약함	-	·해당사항 없음
		2)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보전지역, 습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본 대상지는 대부분 농 경지로 각종 보호지역에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표 계속)

세부 검토항목	구 분		대 안			
	내 용	협의회의 의견	대안1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대안2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 입지의 타당성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가?		-	·본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		-	·본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 서식지에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본 대상지는 입지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3)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미치는 않는가?		Yes	·본 대상지는 대부분 경작지로 과도한 지형 훼손은 없으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	·해당사항 없음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Yes	·경관관련보전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함	-	·해당사항 없음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본 대상지는 입지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가?		Yes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함	-	·해당사항 없음
	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가?		Yes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음	-	해당사항 없음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지는 않는가?		-	·본 대상지는 입지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표 계속)

구 분			대 안			
세부 검토항목	내 용	협의회의 의견	대안1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대안2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 입지의 타당성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 부하량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	·오염총량검토 후 할당 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 협의할 것임	-	·해당사항 없음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Yes	·본 계획수립 및 시행시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행함	-	·해당사항 없음
	2)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의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	·개발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계획으로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가?		-	·개발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계획으로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	·본 대상지는 대부분 경작지로 과도한 지형훼손에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3)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않은가?		Yes	·본 대상지는 입지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은 없는가?(난개발 가능성)		Yes	·본 행정계획은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것으로 연쇄적 개발 가능성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감소함	-	·해당사항 없음
	다)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Yes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해당사항 없음

주) Yes : 수립반영, 긍정적 영향, No : 미반영, 부정적 영향, Yes/No : 판단유보(중립)

2.5 평가서(초안) 공고 및 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여주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다만, 타 법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개발계획 대상지역인 여주시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공람장소는 개발계획 대상지역인 여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임